#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90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 박수민·김 건·박성민

김미애 • 이인선 • 정연욱

윤한홍 • 박준태 • 김선교

김민전 · 임종득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인 국내 모회사가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에게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 등 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년간 정 률로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사업의 수주에 더욱 진정성 있는 모회사는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해당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적극적인 경영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음에도 동일하게 회수가 곤란한 출자전환 손실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는특례를 허용하지 않아 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세제지원하고 있는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과 유사한 요건을 갖춘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 하여도 10년간 균등하게 해외건설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3).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의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대여금, 그 이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 이용으로 정하는 채권 등(이하 "출자전환 대여금등"이라 한다)의 액면가액과 발행되는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가 동일하게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시가(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가 출자전환일 현재 출자전환 대여금등의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출자전환 대여금등 액면가액에서 주식등의 시가를 뺀 금액(이하이 조에서 "출자전환 손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항의 대여금등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1. 출자전환 대여금등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2.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출자전환 대여금등을 출자전환 한 이후 5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 3.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출자전환 손실을 제1항의 대여금등

으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 해당할 것

⑥ 제4항의 출자전환 손실을 제1항에 따른 대여금등으로 보아 대손 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해외건설자회사를 청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 중 다음과 같이 계산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주식등을 처분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

× 출자전환으로취득한주식등 중 처분한주식등의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의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전환 손실을 대여금등으로 보아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아 혅 행 개 정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 산입 특례) ① ~ ③ (생 략) 산입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제1항의 해외건설사업자인 <신 설>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대여금, 그 이 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 권 등(이하 "출자전환 대여금 등"이라 한다)의 액면가액과 발 행되는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 가 동일하게 출자전환 하여 취 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 또 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시가(0보 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가 출자전환일 현재 출자전환 대여금등의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출자전환 대여금등 액면가액에서 주식등의 시가를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출자 전환 손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u>제1항의 대여금등으로 보아 제1</u> <u>항을 적용한다.</u>

- 1. 출자전환 대여금등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

   족할 것
- 2.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출자전환 대여금등을 출자전환 이후 5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 3.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 이 출자전환 손실을 제1항의 대여금등으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인경우에 해당할 것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⑥ 제4항의 출자전환 손실을 제 1항에 따른 대여금등으로 보아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 국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해외건설자회사 를 청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u>④</u> (생 략) <신 설>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 중 다음과 같이 계산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주식등을 처분한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 입한다.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

imes 출자전환으로취득한주식등 중 처분한주식등의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의수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u>⑤</u> (생 략)